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90호
2.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I. 주요내용

-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5조)
-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실 내 적절한 환기설비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비·치료비 지원 및 휴게시설·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 : 2024. 8. 20. ~ 8. 24.(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최윤희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990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제324회 정례회를 통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학교 급식시설과 급식종사자 근무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중장기적 계획, 개선이 필요한 급식시설 및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 등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동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범위를 ‘학교 급식시설’로 특정할 수 있고, 학교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이 조례의 입법목적에 저해하거나 현행 조례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실태조사(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하기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항), 이때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안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항),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수립은 안전한 학교급식실 조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방식과 예산·인력관리·행정지원에 관한 기준, 식재료 구매 관리와 학교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4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책 수립의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한편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청 정책이 총체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7조는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급식시설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인바, 정책 추진의 연계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3) 급식실 환경 개선(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조리 종사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급식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안 제1항), 급식시설 개선 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안 제2항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급식실의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을 통해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화상, 야채분쇄기 등에 의한 신체일부 절단, 근골격계질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배치, 조리기계·기구 및 보관실 배치, 건조 및 물기허용 구역을 구분하는 기준 등을 수립하였으며,¹⁾
- 2023년에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통해 환기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사용 중 점검·관리 방법, 환기설비의 검사방법(체크리스트) 등 환기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²⁾
- 교육부 또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2023)」을 마련하여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예산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학교 1교당 1억원 예정), 지하조리시설과 급식실 인력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³⁾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하급식실 해소를 통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107교)에 대하여 2028년까지 지상 증축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지상급식실(942교)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⁴⁾
- 따라서 안 제8조는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기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정책 방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2012.12.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2023.8.

3)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2023.3.14.

4) 서울자치신문, 서울시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발표, 2024.3.26.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과 일반단체급식 시설이 상이함을 이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구체적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안 제8조2항을 ‘삭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 그러나 학교현장과 일반단체급식 시설이 상이할지라도 급식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은 현재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당 지침의 개정에 따라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⁵⁾을 수립하고 있는바, 안 제8조2항을 원안처럼 규정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조리실 공기질 관리(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는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이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급식종사자의 쾌적한 근로환경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실의 환기설비 설치에 학교 시설 여건과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5)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24.6.3. 내용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3일 공개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부합하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기술지침의 내용을 보완·반영한 것이다.”

-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6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8)에서는 조리장에 대한 시설·설비는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리실의 환기설비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체계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처럼 학교 시설여건과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기적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규의 적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5) 소방시설 설치(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는 급식실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항) 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안 제1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역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6)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7)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져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8)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29.>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

1. 조리장

가. 시설·설비

1)~9) (생략)

10) 조리장내의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9)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바, 안 제10조1항은 상위법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 그러나 이처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급식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학교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규정의 효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 10조1항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사무¹⁰⁾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¹¹⁾는 교육감의 권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위임을 규정한 안 제10조2항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급식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 그러나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급식종사자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안 제12조제2항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예산 등의 지원(안 제14조) 및 지도·감독(안 제1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4조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 급식을 위한 교육감의 예산 등의 지원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식시설과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예산 등의 지원,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학교급식에 있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관계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조리장

가. 시설·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한다. 다만, 이러한 구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조리장은 급식설비·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내부벽은 내구성,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이어야 한다.
- 5)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하되,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6) 천장은 내수성 및 내화성(耐火性)이 있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한다.
- 7)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한다.
- 8)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0) 조리장내의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 조리장의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검수구역은 54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2)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시설, 냉·난방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空氣調和施設) 등을 갖추도록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닐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